



## 성폭력 예방규칙

규정번호	3-4-8
제정일자	2001.03.02
개정일자	2012.04.30
개정번호	Ver.4 총페이지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에서의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성폭력의 정의 및 담당기관의 조직과 운영,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폭력의 정의)** ①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및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이 침해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성 차이에 따른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환경형 성폭력 역시 본 규칙에 적용된다.

③ 공적인 생활에서의 성 차이에 따른 부당한 차별 역시 성폭력으로서 본 규칙에 적용된다.

④ 성폭력 여부의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본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가해자만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도 본 규칙을 적용한다.

**제4조(상담실의 구성)** ① 학내 성폭력 사건의 처리와 성폭력 예방을 위해 본 대학 학생 서비스센터 내에 학생 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

② 상담실에는 학생부처장을 실장으로 하며 상담전문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상담실장은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를 위한 고충처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소집 할 수 있다.

**제5조(상담실의 기능)** 상담실은 일상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폭력 피해를 신고 받고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신적, 물질적, 신체적 피해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일.
3. 성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하는 일.
4. 성폭력 사건 및 그 배경을 조사하고 제반 대책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일.

**제6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학생부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여학생지도 교수 및 간사, 피해자의 지도교수, 가해자의 지도교수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약간 명을 임의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사건처리 및 방법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제7조(신고 및 신고기구)** ① 신고인은 서면, 전화, 통신, 직접방문 및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상담실에 신고한다.

② 피해 당사자는 물론 피해자의 대리인이나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다.

③ 상담실은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조사하지 못한다.

**제8조(사건 당사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사건의 처리 과정에 있어 피해자 보호를 우선한다.

②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명, 연령, 용모, 주소, 소속 및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반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신고인과 피의자 보호는 전항에 준한다.

**제9조(처리 및 방법)** ①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 중 일부를 적용하되 그 범위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1. 실명 공개 사과
2. 다양한 형태의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3. 상담소 등의 성폭력 및 여성문제 관련 단체에서의 일정기간 봉사 활동
4. 대자보, 언론, 공문을 통한 경고

② 모든 결과는 정해진 장소에 1주일간 공고할 수 있다.

**제10조(보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성폭력 예방규칙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